

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

- 어두운 난()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	일
신고인	건축주			
	전화번호			
	주소			

대지위치

지번

*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, 「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접용·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접용·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.

허가(신고)번호	허가(신고)일자	년	월	일
신고내용	연장 존치기간 연장사유	년	월	일까지

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한국어

건축주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| 귀하

신고안내			
제출하는 곳	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	처리부서	건축허가(신고) 부서
첨부서류	해당 가설건축물의 현황(가설건축물의 전면, 후면 및 양 측면을 포함합니다)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(가설건축물 준치기간 연장신고서 제출일 이전 1개월 내에 촬영된 사진을 말합니다)	수수료	원

근거법규

『건축법 시행령』 제15조의2 제2항

-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전까지,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